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679

발의연월일 : 2022. 5. 20.

발 의 자:김영진·김병욱·김성주

김성환 · 김주영 · 박 정

박찬대 · 서동용 · 송기헌

양기대 · 위성곤 · 윤준병

이병훈 · 정일영 · 천준호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과세표준이 달라 조세의 불형평성에 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고가 1주택에 비해 저가 2주택자가 세금을 더 많이납부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음.

1주택자와 다주택자 관계 없이 같은 규모의 자산을 보유했다면 세부담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 조세형평성 및 과세의 선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위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조정하기 위해 주택 분에 대한 납세의무자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또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해당 비율이 2022년 100%로 정해진 점을 감안하여 해당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3조등).

법률 제 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를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 1.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금액이 11억원을 초과하는 자
- 2. 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 3.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주택의 공 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11억원을 초과하는 자
- 4.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8조제1항 본문 중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를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를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를 "금액으로 한다"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	
현 행	개 정 안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제7조(납세의무자) ①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u>납세의</u>	납세
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의무가 있다.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부
	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u><신 설></u>	1.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
	당 주택의 공시가격 금액이 1
	1억원을 초과하는 자
<u><신 설></u>	2. 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
	격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u>과</u>
<u><신 설></u>	3.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주
	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11억원을 초과하는 자
<u> <신 설></u>	4.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
	체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
	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
	<u>는 자</u>

② (생략)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 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을 합산한 금액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 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 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 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 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 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 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 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 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 ④ (생 략)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 제13조(과세표준) ① ---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 -----

② (현행과 같음)
네8조(과세표준) ①
<u>금액으로 한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세13조(과세표준) ① ----- 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 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 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 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 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생 략)

 <u>금액으로</u>	<u>. 한다</u> .

2				 	
				 	 급
액으	으로	한디	<u>-</u> .		

③ (현행과 같음)